

2023년도 제5차 재무경영위원회 회의록

I 개 요

- 일 시 : 2023. 12. 11.(월) 14:00~15:20
- 장 소 : 1호관 507호 영상회의실
- 참석현황 : 재적위원 20명 중 참석 16명, 불참 4명
 - 참석위원(14명)
 - 위원장 유우식, 위원 박종돈, 위원 최병조, 위원 박용호, 위원 서정현, 위원 김석철, 위원 천성철, 위원 노지승, 위원 김경선, 위원 이광호, 위원 최수봉, 위원 이헌구, 위원 조병관, 위원 송인석
 - 불참위원(6명)
 - 위원 한민섭, 위원 김동원, 위원 김동배, 위원 조길수, 위원 김동배, 위원 임조순, 위원 이주호

II 회의결과

- 보고안건: 성립전경비 사용승인 보고
 - 안건요지 [보고자: 재정예산팀장]

- 추진배경

가.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성립전경비에 대하여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되기 전 사용승인 내역을 보고하고자 함

- 관련근거

가. 2023년도 법인회계 세입세출 예산서 제4조(보조금 집행)

나. 인천대학교 법인회계 2023년도 예산편성지침

○ 주요내용

가. 기 간: 2023. 9월(2회 추경 의결 이후) ~ 현재

나. 승인건수: 8개 부서, 8건

다. 승인금액: 2,659,609,000원

라. 개선사항

- 사용승인 결정 시 교학부총장 보고·승인을 득하여 예산 편성
- 24년도 예산편성지침 상 사용승인 절차 명시
- 보조금 교부 → 성립전예산 요구 → 사용 승인(교학부총장) → (재무경영위원회 보고) → 차기 추경 반영

마. 행정사항

- 2023년도 법인회계 제3회(정리)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반영

□ 보고안전: 인천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(안)

○ 안전요지 [보고자: 총무과장]

○ 주요내용

가. 운영개요

- 시 기: 2024. 3월 ~ 계속
- 운영형태: 직장어린이집(민간 위탁)
- 모집정원: 총 7개반(만1세~만5세) / 69명(총 정원)
- 운영인력: 원장 1명, 담임교사 7명, 기타(보조, 연장, 조리) 7명 등 총 15명

나. 소요예산

- 세입예산 (어린이집 기준) (단위: 천원 / %)

구 분	사업주부담 (대학)	정부지원 (보건복지부)	수익자부담 (학부모)	보조금 (지자체)	합계
금 액	453,000	277,000	74,000	102,000	906,000
비 율	50.0	30.6	8.2	11.2	100.0

※ 「영유아보육법」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육비용의 50% 이상 부담

※ 정부지원보육료, 학부모 부담경비, 지자체 보조금은 모집 정원 69명으로 산정

- 세출예산 (어린이집 기준) (단위: 천원 / %)

구 분	인건비	운영비	보육활동비	선택보육비	재산조성비	합계
금 액	510,000	94,000	103,600	98,000	100,400	906,000
비 율	56.2	10.4	11.4	10.9	11.1	100.0

※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 대비 100% 편성한 것으로 실제 편성 시 줄어들 수 있음.

○ 주요 질의 및 응답

- 직장어린이집으로의 전환 사유에 대하여 질의함.
 - ⇒ 201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대체 보육수당이 폐지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주로 분류됨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해야 하나, 그간 연수구에 위탁운영을 하여 운영해옴.
 - ⇒ 위탁계약 만료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었으나, 연수구청 측의 요청 및 법령상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에 의하여 직장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추진함.

- 국가 및 지자체 보조금, 사업주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질의함.
 - ⇒ 법령에 따라 총액의 50%에 해당하는 사업주부담금 453,000천원을 연수구에서 부담하고 있었으나, 직장어린이집 전환에 따라 해당금액을 우리대학이 부담하게 됨. 그 외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부지원금 270,000천원 지원, 지자체보조금 102,000천원 지원, 학부모부담금 74,000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그 외로 연수구 측으로부터 기관보육료를 약 70,000천원 가량 지원받을 예정임. 향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액에 대해서는 심의할 계획임.

- 직장어린이집 모집정원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질의함.
 - ⇒ 법령 및 실제 현원, 학내 수요조사 결과, 예산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집정원을 산출함(84명→69명).

- 차기 재무경영위원회에 직장어린이집 운영규정 제정안 안건 상정 시, 심의자료에 향후 연도별 어린이집 원생 수에 대한 예측이 담긴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포함하여 자료를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으며,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심의할 예정임.

※ 안건명을 「인천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(안)」으로 수정

□ 제21호 심의안건 : 인천대학교 여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

○ 안건요지 [보고자: 총무과장]

○ 제안사유

가. 연구출장의 효율적인 수행 및 연구 예산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종전의 규정을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

○ 주요내용

가. [별표 2]의 운임표 개정

- 제2호-나 항공운임 단서조항

‘단, 항공시간 5시간 이내인 경우 2등 정액 금액으로 지급함’ 삭제

○ 주요 질의 및 응답

○ 여비 규정에 관하여 예산절감을 위한 지침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, 이에 대하여 향후 별도 지침을 제정할 것을 요구함.

○ 심의결과: 수정가결

당 초				수 정			
【별표 2】 운임표				【별표 2】 운임표			
(단위 : 원)				(단위 : 원)			
구분	운임		비고	구분	운임		비고
제 1 호	항공 1등 정액 (First Class) 실비		예산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인 요금 지급	제 1 호	항공 1등 정액 (First Class) 실비		예산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인 요금 지급하고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
제 2 호	가	중간 정액 (Business Class) 실비		가	(중략)	중간 정액 (Business Class) 실비	
	나	중간 정액 (Business Class) 실비 (단, 항공시간 5시간 이내인 경우 2등 정액 금액으로 지급함)				나	
제3호	2등 정액 (Economy Class) 실비			제3호	2등 정액 (Economy Class) 실비		
증빙 영수증	항공영수증			증빙 영수증	항공영수증		

제22호 심의안건 : 인천대학교 국제교류원 교육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

○ 안전요지 [보고자: 국제교육팀장]

○ 제안사유

- 가. 국제교류원 조직개편에 따른 변호사 자문 결과 반영 및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관련 용어를 정비함
- 나. 한국어교육의 내실화 및 한국어연수과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연수생의 수료성적, 강사채용 심사 기준, 주임강사 수당 등을 개선하고자 함

○ 주요내용

- 가. 변호사 자문 결과를 반영하여 제2장 및 제3장의 제목을 “한국어교육센터”와 “외국어교육센터”로 변경
- 나. 한국어연수과정 수료생들의 수료 성적을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
- 다. 근로장학금의 시간당 장학금액을 본교 교내 봉사장학생 지급기준 준용
- 라. 우수한 한국어강사를 채용하기 위하여 서류전형 배점 조정
- 마. 한국어교육 주임 및 급주임 강사의 업무강도 및 처우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강사수당 조정
- 바. 「평생교육법」 등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에 맞추어 ‘환불’을 ‘반환’으로 정비

○ 주요 질의 및 응답

- 23년도 겨울학기가 내년 2월까지인 점을 고려하여 명확한 지침 시행을 위하여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제안함.

○ 심의결과: 수정가결

당 초	수 정
부 칙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부 칙 이 지침은 2024년도 봄학기부터 시행한다.

폐회선언

- 이상 보고와 논의를 종료하고, 위원장이 15시 20분에 폐회를 선언함

2023년도 제5차 재무경영위원회 회의결과

구 분		안 건 명	심의결과
보 고		성립전경비 사용승인 보고	-
		인천대학교 직장어린이집 운영계획(안)	-
심 의	2023-21	인천대학교 여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	수정가결
	2023-22	인천대학교 국제교류원 교육운영 지침 일부개정지침안	수정가결

2023. 12. 11.

위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함.

위원장	유 우 식	(서명)
위원	박 우 종	(서명)
위원	최 병 조	(서명)
위원	박 용 호	(서명)
위원	서 정 현	(서명)
위원	김 석 철	(서명)
위원	한 민 섭	(서명)
위원	김 동 원	(서명)
위원	노 지 승	(서명)
위원	김 경 선	(서명)
위원	이 광 호	(서명)
위원	최 수 봉	(서명)
위원	조 길 수	(서명)
위원	김 동 배	(서명)
위원	천 성 철	(서명)
위원	임 조 순	(서명)
위원	이 주 호	(서명)
위원	조 병 관	(서명)
위원	이 현 구	(서명)
위원	송 인 석	(서명)